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9. 7. 21(화) 10:00		
배포일시	2009. 7. 20(월) 16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김진선 (2150-5150)	담당자	곽상현 사무관(2150-5153)

제 목 : 개정 「국유재산법」 및 시행령·시행규칙 시행

-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소극적인 유지·보전에서 적극적인 개발·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월 「국유재산법」을 대폭 개정 (시행일 : '09.7.31)

- '09.7.21 동 「국유재산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('09.7.21)됨에 따라 개정 「국유재산법」 시행일에 맞추어 동 시행령을 공포·시행할 예정

- ※ '09.6.10.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시 관련 보도자료 既배포

- 금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적 활용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

붙임 :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사항

참고 : 「국유재산법」 주요 개정사항

기획재정부 대변인

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 내용

[1] 국유재산 관리체계 정비

□ 관리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정비 (영 제5조)

- 국유증권 등은 특수성을 고려,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개정 「국유재산법」에 ‘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’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영 제17조~제18조)

- 재정부 차관(위원장), 감사원·행안부·조달청 국장급 공무원 및 교수·변호사·회계사·감평가 등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
- 정부소유 증권 매각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증권매각소위원회를 운영
 - * 기존의 ‘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자문위원회’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로 통합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

[2]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

□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 (영 제6조)

- * 1)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설정이 불가피한 경우
- 2) 해당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

□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^{*}을 명시적으로 규정 (영 제8조)

- * 1) 사용료 면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
- 2) 재산가액 대비 유지·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
- 3) 사용료 면제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

□ 일반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 (영 제13조)

□ 유휴 행정재산의 총괄청 보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 재산* 및 총괄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영 제14조)

*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

□ 경쟁 입찰 유찰시 최저 사용료(대부료) 인하(50%→20%)함으로써 계속적인 유찰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 발생 방지 (영 제27조)

□ 영세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작용 및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를 인하 (영 제29조)

○ (경작용)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 1/5 → 1/10

○ (주거용) 재산가액의 2.5%이상 → 2%이상(기초수급자는 1% 이상)

□ 사용료 분할납부시 할부금리를 시장상황을 고려한 총괄청 고시 금리로 변경 (영 제30조)

○ (기존) 연 6%로 고정 → (변경) 시중은행 정기에금 금리를 고려한 총괄청 고시 금리(매년 초 고시)

□ 국공유재산간의 교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-지자체간 필요 토지의 원활한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(영 제57조)

○ (원칙) 유사성이 없거나, 일방의 재산가액이 다른쪽 가격의 3/4 이하일 경우 교환 불가

○ (예외) 공유재산의 경우 '유사성'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, 가격 요건은 '다른 쪽 가격의 1/2 이상'으로 완화

□ 국유재산의 양여조건*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리기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무분별한 양여를 방지 (영 제58조)

- * 1)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 받은 지자체가 계속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2) 지자체 소유 토지위의 국유건물이 용도폐지된 경우 등

[3] 기타

□ 「현물출자법」이 「국유재산법」으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(영 제65조~제67조)

□ 국유재산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공개범위*를 규정 (영 제74조)

- * 1) 국유재산의 취득, 운용, 처분 및 보유 현황
- 2) 국민이 활용가능한 국유재산(사용허가, 대부, 매각) 현황
- 3) 국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관리 상태 등에 관한 현황

참고 : 「국유재산법」 주요 개정 내용

(1) 국유재산 관리체계 정비

□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명시 (법 제3조)

(현행) · 없음

(개정) · 국유재산 관리·처분의 3대 기본원칙 신설

1.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룰 것
2.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
3.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

□ 주요 용어의 정의조항 마련 (법 제2조)

(현행) · 없음

(개정) · 용어정의 신설(국유재산, 관리, 처분, 관리전환, 변상금, 사용허가, 대부계약, 정부출자기업체 등)

□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(법 제6조)

(현행) · 행정재산(공용·공공용·기업용), 보존재산, 잡종재산

(개정) · 행정재산(공용·공공용·기업용·보존용), 일반재산

□ 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보완 (법 제9조)

(현행) · 단년도 계획 위주

·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

(개정) ·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정책방향 포함

·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기 명시

□ 현물출자법(폐지)의 통합 (법 제60조~제65조)

(현행) · 별도의 법률(현물출자법)로 규정

· 구체적인 현물출자 요건 없음

(개정) · 국유재산법으로 편입하여 통합규정

· 현물출자 요건 등 규정

□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설치(법 제26조)

- (현행) · 하위법령에 개별 위원회 산재
 - 시행령 :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위원회, 연합청산위원회
 - 훈령 : 국유재산관리 정책자문위원회
- (개정) · '국유재산정책심의회'로 통합·운영
 - 국유재산의 중요정책, 제도·법령 개선,
 - 개발, 직권용도폐지, 관리전환 결정
 - 관리계획, 현물출자 등

[2]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

□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(법 제59조)

- (현행) · 총괄청의 승인으로 개발사업 추진
 - 임대형에 한해 허용
- (개정) · 개발기준 및 절차 등 마련
 - 개발유형 확대(임대, 분양, 혼합형): 시행령에 위임

□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(법 제18조)

- (현행) · 기부채납시에만 허용
- (개정) · 영구시설물 허용범위 확대
 - ※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조건
 - ①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, 그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
 - ②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를 조건으로
 - ③ 일정기간(대부기간 10년, 갱신 가능) 예외적으로 허용

□ 총괄청의 직권 용도폐지권 등 유휴행정재산 관리 강화 (법 제22조)

- (현행) · 소관 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
 - 용도폐지요구권
- (개정) · 관리청의 소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의무 신설
 -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결정 근거조항 신설
 - * 이와 관련 조달청에 유휴재산 현황파악, 용도폐지 건의권 등을 부여(시행령 개정)함으로써 집행절차상의 완결성 제고

□ 임대시 재계약 허용 등 (법 제35조)

- (현행) ▪ 국유재산 임대기간 : 행정재산 3년 이내, 잡종 재산 5년 이내
▪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갱신 가능
- (개정) ▪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: 5년 이내
▪ 수의계약 이외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

□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(私權) 설정의 제한적 허용 (법 제11조)

- (현행) ▪ 행정재산 : 사권설정 금지
▪ 잡종재산 : 규정 없음
- (개정) ▪ 행정재산 : 현행 유지
▪ 일반재산 : 사권설정의 제한적 허용
- 판결,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
- 사권 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

[3] 기타 재산관리·처분상 필요 사항 보완

□ 매각가능 재산의 범위 규정 (법 제48조)

- (현행) ▪ 없음
- (개정) ▪ 매각 가능한 사유(재산) 규정
- 타 법률상 또는 공익사업 수행상 필요시
- 특별회계·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매각
- 재산의 위치·규모·형태상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

□ 건물 등의 철거 기준 마련 (법 제41조)

- (현행) ▪ 없음
- (개정) ▪ 건물 등 시설물의 철거 기준 마련
-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,
- 유지·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

□ 사유지상의 국유건물에 대한 양여근거 마련(법 제55조)

- (현행) · 지자체가 공용·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시 양여 허용
(개정) ·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 허용
- 보존·활용의 필요가 없으며, 매각·대부가 곤란하고,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

□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(법 제68조)

- (현행) ·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별도 규정
- 대장가격 : 취득원가(구입·교환가격 등), 공시지가 등
-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5년마다 가격개정
- 공공용 재산 중 도로·하천·항만·공유수면 등은 결산에서 제외
(개정) · 국가회계법상의 「국가회계기준」에서 정하도록 위임

□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법 개선(법 제73조)

- (현행) · 사용료와 대부료·변상금의 연체료가 상이
- 사용료, 관리소홀 가산금 : 가산금(100분의 3), 증가산금(매월 1천분의 12)
-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자금, 변상금 : 연체 기간별 12~15%
(개정) · 국유재산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자금, 변상금의 연체료를 일원화(연체기간에 따라 12~15%)

□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 마련(법 제76조)

- (현행) · 없음
(개정) ·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기본 원칙 신설